

인천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19가단2750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용해

변론 종결 2021. 1. 19.

판결 선고 2021. 2. 2.

주 문

1. 피고와 망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7. 19.자접수 제616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B와 사이에, B이 D을 운영하면서 아래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대출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이하 순번에 따라 '1차,2차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아래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대출금액(원)
1	E	180,000,000 (최종 136,000,000)	2012. 9. 17.	2013. 9. 16. (최종 2019. 9. 11.)	기업일반자금대출	F	200,000,000
2	G	119,000,000 (최종 107,100,000)	2014. 7. 25.	2015. 7. 24. (최종 2019. 7. 19.)	일반자금대출	H	140,000,000

나. B은 위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9. 7. 2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4. F에 대하여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38,895,123원을, 2019. 11. 8. H에 대하여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08,583,085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원고의 1, 2차 보증의 보증잔액금원에 대한 위약금은 합계 1,489,900원이고, 원고는 채권보전조치 등으로 1,684,805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7. 19. 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B이 2020. 1. 20. 사망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B의 1, 2, 3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2020. 2. 25. 인천가정법원 2020노단10134호로 B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며, B의 4순위 상속인들 중 I, J, K은 2020. 8. 26. 인천가정법원 2020노단11009호로 B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C은 같은 법원 2020노단11010호로 상속한 정승인을 받았다. K은 2020. 12. 26. 사망함에 따라, 결국 C이 B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2019. 7.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9. 7. 2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19. 11. 8. 및 2019. 12. 24. B을 대위하여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L기관,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49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250,652,913원(= 138,895,123원 + 108,583,085원 + 1,684,805원 + 1,489,900원) 외에도 주식회사 H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256,956,138원(2019. 7. 18. 기준) 및 M, N, O 등에 대한 카드대금 연체채무 등이 다수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일단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주었고, 2007.9. 11.부터 2016. 12. 21.까지 합계 226,000,000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B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고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피고가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B의 관계에 비추어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기존 채무인 사업자금 대여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인정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피고와 B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B의 상속인인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남해인